

『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구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,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(안 제4조)

나.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다.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라. 감정노동자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은,
 -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,
 -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노동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.